

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3. 23.\]](#)

-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3. 23.\]](#)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3. 23.\]](#)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고,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3. 23.\]](#)
- ⑤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제2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.
- ⑥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서 "자본금 2억원 이상,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[\[개정 2013. 3. 23., 2021. 1. 5.\]](#)

1.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
2.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
  - 가.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 · 수신 · 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
  - 나.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
  - 다.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 · 저장 시설장비
  - 라.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 · 수신의 일자 · 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 · 관리 하는 시설장비
  - 마. 단위물류정보망 및 외국의 물류정보망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
3.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
  - 가. 물류관리사 1명 이상
  -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기사 · 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명 이상
  - 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정보통신분야(기술 · 기능 분야)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
  - 라. 물류정보의 처리 · 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 · 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
  - 마.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,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명 이상

[전문개정 2012. 11. 30.]

**제23조** 삭제 [\[2012. 11. 30.\]](#)

**제24조(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)** 법 제32조제1항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" 및 법 제35조제1항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"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, 물류사업의 지원,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. [\[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5. 8. 3., 2017. 3. 29.\]](#)

1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
2. 「검역법」
3. 「도선법」
4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5. 「상법」
6. 「철도사업법」
7. 「공항시설법」
8. 「항만법」
9. 「항만운송사업법」